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법 보호대상에 교제폭력 피해자 추가 〉
■ 김한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573호)

2025. 2.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참고사항	1
IV. 검토의견	3
1. 법 보호대상에 교제폭력 피해자 추가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한규의원 등 28인
2. 제 안 일 : 2024. 11. 14.
3. 회 부 일 : 2024. 11.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제폭력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에 따라 교제폭력의 예방과 교제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교제폭력과 스토킹은 그 행위 대상자가 친밀관계의 여부에 차이가 있을 뿐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방법 등에 있어서는 동일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제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도 스토킹 피해자와 같이 보호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스토킹·교제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려는 것임.

III.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법 보호대상에 교제폭력 피해자 추가

개정안은 법 제명을 「스토킹·교제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정의조항에 “교제폭력” 및 “교제폭력행위자”를 추가하면서 “피해자”에 교제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포함하며, 국가 등의 책무, 실태조사, 예방교육, 피해자 불이익 조치의 금지, 지원시설 등의 조항에 교제폭력을 추가하는 등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명,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제9조, 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

현행	개정안
<u>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u> 제1조(목적) 이 법은 <u>스토킹</u>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u>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u>」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톱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를 말한다. 2. (생략) <u><신설></u>	<u>스토킹·교제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u> 제1조(목적) -----<u>스토킹 및 교제폭력</u>----- -----. 제2조(정의) ----- -----. 1. -----「<u>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u>」----- -----. 2. (현행과 같음) 3. “교제폭력”이란 「<u>스토킹범죄 및</u>

현행	개정안
<신설> 3. “피해자”란 <u>스토킹</u>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스토킹</u>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u>스토킹</u>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u>스토킹</u> 예방·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3. ~ 6. (생략) 7. <u>스토킹</u>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8. · 9. (생략) ② (생략) 제4조(<u>스토킹</u>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u>스토킹</u>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u>스토킹</u>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5조(<u>스토킹</u> 예방교육 등) ① 국가기	<u>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u> 제2조제4호에 따른 <u>교제폭력</u> 행위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u>교제폭력범죄</u>를 말한다. 4. “<u>교제폭력행위자</u>”란 <u>교제폭력</u>을 한 사람을 말한다. 5. -----<u>스토킹</u> 또는 <u>교제폭력</u>-----.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 -----<u>스토킹</u> 및 <u>교제폭력</u>(이하 “<u>스토킹등</u>”이라 한다)-----. 1. <u>스토킹등</u>----- 2. <u>스토킹등</u>----- 3. ~ 6. (현행과 같음) 7. <u>스토킹등</u>----- 8.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조(<u>스토킹등</u> 실태조사) ① ----- -----<u>스토킹등</u>----- ----- -----<u>스토킹등</u>-----. ② (현행과 같음) 제5조(<u>스토킹등</u> 예방교육 등) ①

현행	개정안
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u>스토킹</u>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 담당자 등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u>스토킹</u>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u>스토킹</u>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는 <u>스토킹</u>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u>스토킹</u> 예방을	----- ----- -----<u>스</u> <u>토킹등의</u> ----- -----. ----- ----- -----. ② -----<u>스토킹등</u>----- ----- ----- ----- ----- ----- ----- ----- ----- ----- -----. ③ ----- ----- -----<u>스토킹등</u>----- ----- ----- -----. ④ ----- -----<u>스토킹등</u>----- -----<u>스토킹등</u>-----

현행	개정안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⑤ · ⑥ (생략) 제6조(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등) ① 피해자 또는 <u>스토킹</u> 사실을 신고한 자를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 또는 <u>스토킹</u>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u>스토킹으로</u> 피해를 입은 것 또는 신고를 한 것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8. (생략) ② (생략) 제9조(지원시설의 업무)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u>스토킹</u>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2. ~ 5. (생략) 6. <u>스토킹행위자</u>에 대한 고소와 피해 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 7. (생략) 8. <u>스토킹</u>의 예방·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9. <u>스토킹과 스톱킹 피해</u>에 관한 조사·연구 10. · 11. (생략) 제10조(종사자 등의 자격기준) ①다음	-----.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등) ① -----<u>스토킹등</u>----- -----<u>스토킹등</u>----- -----<u>스토킹등으로</u>----- -----. 1.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지원시설의 업무) ----- -----. 1. <u>스토킹등</u>----- -- 2. ~ 5. (현행과 같음) 6. <u>스토킹행위자 또는 교제폭력행위자</u>----- ----- 7. (현행과 같음) 8. <u>스토킹등</u>----- ----- 9. <u>스토킹등과 스톱킹등 피해</u>----- ----- 10. · 11. (현행과 같음) 제10조(종사자 등의 자격기준) ①

현행	개정안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 3. (생략) 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생략) 제13조(경찰관서의 협조) ① 지원시설의 장은 <u>스토킹 행위자</u>로부터 피해자등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4조(사범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① 사범경찰관리는 <u>스토킹</u>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된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범경찰관리는 피해자·신고자·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u>스토킹 행위자</u>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	----- ----- -----. 1. ~ 3. (현행과 같음) 4.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경찰관서의 협조) ① ----- -----<u>스토킹 행위자</u> 또는 <u>교제폭력 행위자</u>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사범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① -----<u>스토킹등</u>----- -----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스토킹 행위자 또는 교제폭력 행위자</u>-----

현행	개정안
를 하여야 한다. ⑤ (생략)	-----. ⑤ (현행과 같음)

교제폭력이란 애인 간에 발생하는 신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 통제, 그리고 이별 후에도 발생하는 폭력 범죄를 포함한 개념¹⁾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에 초점이 있음. 교제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를 맺고 다양하고 사적인 정보를 공유함에 따라 피해자가 보복 가능성을 이유로 가해행위에 소극적으로 행동하거나 폭력 등이 지속적·상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교제폭력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법적 정의나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범죄 유형에 따라 「형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등에 따라 가해자 처벌이, 「범죄피해자 보호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 등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1) 신보라, “교제폭력(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 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3.9. 4쪽.

* 참고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교제폭력을 “연인관계나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으로,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상대를 감시(스토킹)하거나 통제하려는 행위와 정서적(언어적, 경제적) 학대,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음(WHO clinical and policy guidelines, 2013).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교제폭력의 신고 건수는 2021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24년 10월 기준 신고건수는 전년 10월(64,875건) 대비 11.4% 증가한 72,276건, 검거인원은 전년 10월(11,589명) 대비 4.5% 증가한 12,110명으로 나타남.

<교제폭력 발생 및 검거현황>

(단위: 건, 명)

구분	신고건수	검거인원				
		계	폭행·상해	체포·감금·협박	성폭력	경범죄 등 기타
2021	57,305	10,538	7,507	1,000	145	1,886
2022	70,790	12,858	9,068	1,154	274	2,332
2023	77,150	13,921	9,430	1,258	453	2,780
2023.10.	64,875	11,589	7,892	1,048	359	2,290
2024.10.	72,276	12,110	8,119	1,183	405	2,403
대비(%)	11.4	4.5	2.9	12.9	12.8	4.9

자료: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25”, 2024.12, 153쪽 참조.

최근 화성 오피스텔 여자친구 살인사건, 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 등²⁾ 교제관계에 있거나 이전에 있었던 사람 사이에서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제폭력을 그동안 연인 간 발생하는 사적 애정문제로 보아 공권력의 개입을 최소화하던 입장에서 벗어나,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해자를

2) 화성 오피스텔 여자친구 살인사건은 2024년 3월 화성시 한 오피스텔에서 26세 남성 김레아가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모친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고, 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은 2024년 4월 경남 거제에서 김모씨가 집에서 자고 있던 여자친구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임.

보호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그런데 교제폭력에 대한 법적 정의나 명확한 기준이 없고 교제폭력은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행위와 구별되는 점이 있어 피해자 보호·지원이 미흡한 부분이 있음.

교제폭력은 애정을 기반으로 한 “연인” 간 관계에서 발생하므로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등 “가정구성원”³⁾을 행위객체로 하는 가정폭력과 차이가 있고, 교제폭력은 “관계”에 초점을 두는 반면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방식”에 초점⁴⁾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됨.

즉, 교제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가정폭력처벌법」 및 「가정폭력방지법」을 적용할 수 없고, 교제폭력이 스토킹 행위를 수반하지 않으면 「스토킹처벌법」 및 「스

3)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4)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 사. (생략)

토키방지법」도 적용할 수 없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개정안은 「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방지법」 적용대상에 “교제 폭력”을 추가하여 교제폭력의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의무가 고용주에게 주어지는 등 교제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피해자 보호의 법적 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현재도 「여성폭력방지기본법」상 “여성폭력” 정의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을 포함하고 일반적인 피해자 보호·지원 조항을 두고 있으며⁵⁾,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을 통해 교제폭력 피해자에게도 스토킹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주거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5)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제15조(피해자 보호·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 지원, 취학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 회복, 자립·자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관계 법률에 따라 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피해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호·지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안과 같이 교제폭력 정의 및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법률에 명시되는 것이 법적 명확성이나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은 「스토킹처벌법」 상 “교제폭력” 및 “교제폭력범죄” 정의를 인용하는 등 「스토킹처벌법 개정안(김한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55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법제사법위원회의 해당 법률안 논의 및 의결 사항에 맞추어 개정안의 내용을 확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2025년 2월 기준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절차 특례나 피해자 보호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1건 외에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등 제정법안 3건,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3건 등 총 7건이 계류 중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교제폭력 관련 개정안>

법률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안일	주요내용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안 (2205572)	김한규의원	2024.11.14.	교제폭력행위 및 교제폭력범죄 정의 신설,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대상에 교제폭력행위자 추가 등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2201445)	김미애의원	2024. 7. 5.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교제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 규정, 교제폭력 및 교제폭력범죄 정의 신설 등

법률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안일	주요내용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안 (2207401)	박정현의원	2025. 1. 9.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및 교제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 규정, 교제폭력행위 및 교제폭력범죄 정의 신설 등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안 (2207473)	황정아의원	2025. 1.13.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교제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 규정, 교제 관계, 교제폭력 및 교제폭력범죄 정의 신설 등
가정폭력처벌법 전부개정안 (2201584)	정춘생의원	2024. 7.10.	법 제명을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변경, “가정폭력”의 정의를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으로 변경 등
가정폭력처벌법 전부개정안 (2201685)	소병훈의원	2024. 7.12.	법 제명을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변경, “친밀한 관계 폭력” 정의 신설 등
가정폭력처벌법 일부개정안 (2204064)	김태년의원	2024. 7.19.	가정구성원에 교제(交際)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을 추가 등

한편, 개정안을 입법화할 경우 부칙에 다른 법률의 개정을 신설하여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2조⁶⁾제1항 “스토킹실태조사”를 “스토킹등 실태조사”로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여성가족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에 대한 법적

6) 「여성폭력방지법」 제12조(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에 관하여 여성폭력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여성폭력실태조사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스톱킹 실태조사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근거를 마련하여 교제폭력 피해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및 대응을 강화할 수 있어 수용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644